

□ 공통기준

- (집행금액 인정범위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선정사업자간 기 체결한 약정서에 기재된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한함
 - 선정사업자가 약정기간 내 직접 지출한 비용
- (정산요청)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제출
 - 모든 사업비는 지출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가능하며, 업체 선(先)지출 후(後) 정산
 - 사업항목별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정산 요청 가능, 중간정산 실시하며 약정기간 내 최종 정산요청까지 완료, 불가피한 사유없이 정산요청이 지연될 경우 정산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* 중간정산 일정을 aT 협의 후 변동 가능
 - 정산증빙은 지원항목별로 상이하나, 각국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(세금계산서 등), 세부지출 항목이 명시된 인보이스, 카드매출 전표, 송금증 등 지급 수단에 맞는 지출증빙을 필수 제출 필요
 - * 지원항목별 요구 증빙자료는 세부 기준 참고
 - * 해외기관이 발행한 인보이스의 경우, 예금주, SWIFTCODE, 계좌번호, 은행명, 은행주소 명기 필요
 - * 정산 증빙 제출 시 일부 내용이 아닌 전체 내용 첨부 필수(예시: 컨설팅 계약서 제출 시 금액이 나와있는 부분만 발체 제출 불가, 전체 계약서 제출)
- (지출증빙)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을 제출해야하며, 증빙 내역이 현지어로만 되어 있을 경우, 번역본 또는 주요사항 한국어 명기 필수
 - * 증빙자료 제출 시 사업내용, 금액 등이 판독 가능한 고화질의 이미지 첨부이 필수, 저화질의 이미지 증빙서류 제출로 내용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정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의 과실임
- (환율적용) 환율증빙이 있는 경우 해당 환율을 적용하며, 환율증빙이 없는 경우, 송금일(결제일) 기준 최초고시 KEB하나은행 송금 보낼 때 기준 적용
- (정산불가) 자산구입비, 국내 발생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, 간이(수기)영수증, 미지급증, 중복수령, 자사물품대 등

- (정산가능 여부 사전확인) 실제 사업 수행 전 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경우 aT에 반드시 확인 필요
 - 사전 확인 후에도 실제 진행과정에서 정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최종정산에서 정산 거절 가능
- (정산협조) aT는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□ 지원항목

지원항목	주요내용	증빙서류
① 시험인증: 해외제품 등록을 위한 임상·비임상·성능시험 비용		
임상시험, 비임상시험, 성능시험 등 의뢰(검사) 비용	■ 국내·외 전문 시험실시기관 등과 시험계약 체결 후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진행	■ 시험의뢰서 또는 외부위탁기관과 계약서 등 * 시험계획, 세부산출내역 포함 * 외부 위탁기관 사업자등록증, 개요 등 ■ 시험결과보고서 ■ 인보이스(대금청구서) ■ 지출증빙 * 예) 세금계산서, 송금확인증 등 * <u>자가실험 지원 제외</u>
시험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(한도 20백만원)	■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, 전문 컨설팅 업체(국내외)와 계약 후 컨설팅 진행	■ 컨설팅계약서 * 컨설팅 수행계획, 세부산출내역 포함 * 컨설팅 업체, 사업자등록증, 개요 등 ■ 컨설팅 결과보고서 ■ 인보이스(대금청구서) ■ 지출증빙 * 예) 세금계산서, 송금확인증 등
② 실증: 제품, 서비스의 고도화, 바이어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성능(효과) 실증(시연)을 위해 필요한 경비		
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경비	■ 실증시험 테스트베드 등 운영을 위한 시설임차료	■ 임차계약서, 인보이스, 지출증빙 등 * 세부산출내역포함
	■ 제품의 성능, 기술 등을 위한 실증 장비, 기구 등 임차료	■ 임차계약서, 인보이스, 지출증빙 등 * 세부산출내역포함
	■ 실증,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	■ 구입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인보이스, 지출증빙 등
	■ 실증위한 장치 설치, 철거 관련 비용	■ 계약서, 인보이스, 지출증빙 등 * 세부산출내역포함

지원항목		주요내용	증빙서류
		■ 통관·배송·운송비 (해외운반, 수출 한정)	■ 견적서, 운송비 인보이스,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서, 운송 B/L, 수출신고필증 운송 Packing List * 통관 방식에 따라 증빙 변동 가능, 단 핸드캐리비용 지원 불가
	성능(효과) 시험관련 비용	■ 성능(효과) 검증을 위한 시험 비용 등 - 기호성 테스트 - 안전성 검증 등 포함 * 외부 위탁기관 등 활용하여 수행	■ 시험의뢰서 또는 외부위탁기관과 계약서 등 * 시험계획, 세부산출내역 포함 * 외부 위탁기관 사업자등록증, 개요 등 ■ 시험결과보고서 ■ 인보이스(대금청구서) ■ 지출증빙 * 예) 세금계산서, 송금확인증 등 * 자가실험 지원 제외
	성능 검증을 위한 장비 활용	■ 성능개선, 시험·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	■ 임차계약서, 인보이스, 지출증빙 등 * 세부산출내역포함
	실증 관련 컨설팅 비용 (한도 20백만원)	■ 실증과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, 전문 컨설팅 업체(국내외)와 계약 후 컨설팅 진행	■ 컨설팅계약서 * 컨설팅 수행계획, 세부산출내역 포함 * 컨설팅 업체, 사업자등록증, 개요 등 ■ 컨설팅 결과보고서 ■ 인보이스(대금청구서)
기타		■ 항목별 주요내용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, <u>사업항목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의 제안, 아이디어 또는 사업목적</u>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원내용이 있을 경우 협의 후 지원가능 ■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, 사업 추진 국가에 따라 요청하는 증빙서류는 일부 변동 가능 ■ 기타 항목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유사 수출지원사업 등에 준하여 결정	
공통 사항		■ 자산성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용 ■ 지원대상(업체) 임직원의 인건비, 여비 등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■ 유류비, 렌트카 비용(자가 운송비) 등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■ 시제품, 시작품, 판매상품의 제작, 생산비용 ■ 국내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은 정산 불가 ■ 증빙이 미비하거나,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할 적절한 증빙이 없는 경우	

참고 3 2025년 상품 연구 · 개발 사업 모집공고(안)
